

국고금 취급규정

제정	1984.	8.	27.	총재결재	국주	801-	960
개정	1987.	12.	10.	총재결재	국주	8011-	1336
	1989.	12.	16.	총재결재	국주	8011-	1480
	1992.	8.	18.	총재결재	국주	8011-	1067
	1994.	11.	21.	총재결재	국기	8011-	1483
	1995.	1.	19.	총재결재	국기	8011-	82
	1996.	6.	5.	총재결재	국총	8011-	905
	1997.	3.	5.	총재결재	국총	8011-	322
	1997.	8.	30.	총재결재	국총	8020-	1190
	1998.	3.	18.	총재결재	국총	8011-	268
	1999.	7.	1.	총재결재	금국	1011-	790
	2001.	11.	23.	총재결재	금국	1011-	884
	2002.	12.	31.	총재결재	금국	8011-	1040
	2003.	4.	28.	총재결재	금국	8011-	315
	2005.	7.	1.	총재결재	금국	8011-	353
	2008.	7.	3.	총재결재	국고팀	-	1124
	2009.	3.	26.	총재결재	국고팀	-	534
	2010.	7.	14.	총재결재	국고팀	-	1406
	2012.	2.	22.	총재결재	국고팀	-	498
	2014.	12.	1.	총재결재	국고팀	-	1945
	2016.	9.	20.	총재결재	국고팀	-	2170
	2020.	6.	10.	총재결재	국고팀	-	1367
	2023.	8.	14.	총재결재	국고팀	-	21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은행법」, 「국고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 설치 운영」에 따라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 설치·운영과 국고금 및 국고예금의 취급, 한국은행 국고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대리점”이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2조제1항에 따른 국고대리점을 말하며 지정방식에 따라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한다.
2. “국고수납대리점”이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중앙회 등”이라 한다) 영업점 중 한국은행이 국고금의 수납사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영업점을 말한다.
3. “국고금수납점”이란 제2호의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중앙회 등이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임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정한 그 회원조합, 회원금고, 회원저축은행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중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이하 “회원조합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취급점”이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이하 “금융업무실”이라 한다) 및 한국은행의 각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와 국고대리점을 말한다.
5. “통할점”이란 담당지역 내에 소재하는 취급점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국고금 취급사무를 통할하고 수입금 계리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업무실 및 지역본부를 말한다.
6. “본부”란 국고금 지출사무의 취급,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이용한 업무의 처리 및 운영 등 국고금 취급사무를 총괄하는 금융업무실을 말한다.
7. “국고전산망”이란 한국은행이 국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 한다)과 금융기관,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구축·운영하는 국고금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8. “국고금”이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고금 중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탁되는 것을 말한다.
9. “국고예금”이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는 국고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0.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란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의 설치·운영, 한국은행 및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취급 및 자금관리와 국고전산망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납부수단) ① 취급점은 국고금을 현금, 증권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납공무원이 아닌 자가 한국은행 취급점에 납부하는 경우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한정한다. 다만, 금융업무실장이 전시, 전산망 장애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국고대리점

제1절 설치 및 폐지

제4조(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한국은행을 대리하여 국고금의 수납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과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1.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2.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 및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
3. 예상업무량이 한국은행 국고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③ 중앙회 등이 국고금의 수납사무를 그 회원조합 등에게 다시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국고금수납점 지정에 관한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앙회 등과 제3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회원조합 등이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치를 갖춘 것(회원조합 등이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회원조합 등이 수납한 국고금의 결제 및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

⑤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이 규정,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영업양도, 합병, 해산, 파산, 폐업 등으로 국고금 수납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장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장관이 시행규칙 제92조제7항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 전체의 국고대리점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계약체결·해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장(이하 “금융업무실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고수납대리점의 설치 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후 국고수납대리점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에 해당 영업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국고수납대리점을 폐지하거나 국고수납대리점의 명칭·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가 완료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국고금수납점의 설치 등) ① 한국은행과 제4조제3항의 계약을 체결한 중앙회 등이 회원조합 등을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회원조합 등과 국고금수납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 등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한 회원조합 등의 영업점을 추가로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등은 국고금수납점계약을 해지하거나 국고금수납점의 지정 취소 또는 명칭·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가 완료된 때에는 제4조제3항의 추가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중앙회 등의 산하 회원조합 등이 아닌 금융기관이 중앙회 등의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폐지 및 설치 제한)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고대리점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국고수납대리점에 한정한다)하거나 중앙회 등에 국고금수납점 지정을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국고금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고금사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시행규칙 제92조제5항에 따라 특정 국고대리점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고수납대리점이 폐지되거나 국고금수납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각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국고대리점을 폐지(국고금수납점의 경우 지정 취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할 경우 해당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등에 대하여 폐지일부터 1년간 국고대리점 재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납세

자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 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해당 국고대리점의 사고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하여 국고대리점 재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제2절 국고대리점 관리

제8조(한국은행의 업무지도 및 평가 등) ① 통할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고대리점에 대하여는 업무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고금의 횡령 또는 유용 등 사고가 발생한 국고대리점
2.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잘못이 자주 발생하는 국고대리점
3. 그 밖에 통할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고대리점

② 본부 또는 통할점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국고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통할점은 담당지역 내에 설치된 국고대리점에 대한 업무수행상태 및 지도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연 1회 이상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고대리점 관리에 활용한다.

제9조(금융기관의 업무지도 등) ① 금융기관은 자체업무계획에 따라 국고대리점에 대한 업무지도 및 업무연수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소속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의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한국은행은 중앙회 등의 업무수행 상태 등에 따라 중앙회 등의 본점의 국고업무 관련 부서 및 국고대리점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재) ① 한국은행은 국고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 및 국고대리점에 주의환기, 국고금 수납액의 조기회수, 집중지연이자 부과, 국고대리점 폐지 또는 설치 제한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재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의 횡령이나 유용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고금 취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국고금 수납을 거절하거나 기피하여 납세자 등의 민원을 초래한 경우

②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결제모점을 포함한다)이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이거나 지시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고금 취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주의환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집중지연이자는 국고금 횡령 또는 유용 등의 사고로 국고금의 집중이 지연된 경우에 부과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결제가 지연된 국고금에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의 이율에 1%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수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인계) 금융기관은 소속 국고대리점이 폐지된 때에는 인수점을 지정하여 폐지되는 국고대리점의 사무를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국고금 처리 및 결제

제13조(국고금의 수납) ① 한국은행은 수납한 국고금을 정부당좌예금에 입금하고 국고대리점은 수납한 국고금을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한다.

② 금융기관은 소속 국고대리점에 설치된 국고대리점계정 잔액의 정확성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통할점은 국고대리점에 설치된 국고대리점계정 잔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국고대리점,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이하 “국고금수납기관”이라 한다) 매일의 국고금 수납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하거나 전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1항의 자체 수납 국고금 및 제3항의 국고금수납기관 수납 국고금을 회계계정별, 계좌별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제3항의 수납자금에 대한 회계계정 잔액 가산은 제14조에 따른 수납자금 회수일에 한다.

제14조(수납자금의 결제) ① 통할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국고금수납기관의 국고금 수납액을 정부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보고일 다음 영업일 오후 2시에 해당 기관(결제대행은행을 포함한다)의 당좌예금계좌 또는 우체국예탁금계좌(우정사업본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회수한다. 이 경우 정부당좌예금의 출금가능시점은 제13조제4항 단서 이후로 한다.

② 통할점은 필요한 경우 국고대리점의 국고금 수납액을 제1항의 기일보다 앞당겨 결제할 수 있다.

제15조(국고금의 지급) ① 본부는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수입징수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이하 이 장에서 “지출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국고금수납기관 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채권자 등의 예금계좌 등으로의 국고금 이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계계정

및 계좌에서 국고금을 지급(환급금 및 반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체 등의 절차를 밟는다.

② 본부는 지출관 등으로부터 다른 국고계정 등으로의 대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계계정 및 계좌에서 국고금을 지급하여 대체의 절차를 밟는다.

제16조(지급자금의 결제) 본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정부당좌예금에서 출금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해당 금융기관(중앙회 등 산하회원조합 등의 계좌에 입금이 의뢰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 등을 말한다)의 당좌예금계좌 등에 입금하거나 우체국예탁금계좌에 대체의 절차를 밟는다.

제4장 국고예금의 취급

제17조(국고예금의 취급) ① 국고예금을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및 우체국(이하 이 장에서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은 국고예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고예금의 예금주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고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은 그 취급상황을 매일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고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원금에 더하지 않고 수입금으로 납부하며, 출납공무원과의 월계대사 등은 한국은행이 실시한다.

⑤ 국고예금 계좌의 개설 및 거래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등의 보통예금 거래방법에 따른다.

제5장 국고전산망의 운영

제18조(취급업무) ① 한국은행은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한다.

1.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국고금 지급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이하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라 한다)
2.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국세환급금 지급 등의 업무를 파일 송수신 방식으로 처리
3. 국고금 수납내역 및 국고예금 취급내역 등 국고금 취급 관련 자료를 파일 송수신 방식으로 처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에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새로운 업무를 취급하거나 취급업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한국은행 부서장은 한국은

행 IT전략국장(이하 “IT전략국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하고 미리 금융업무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참가기관) ① 국고전산망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시행규칙 제92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고금수납기관(이하 “참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법에 따른 국고금 총괄관리기관으로서 참가한다.

②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은행과 국고전산망이용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취급은 국고금 수납업무의 안정성이 검증된 참가기관(회원조합 등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과 국고전산망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관이 최초로 국고전산망에 접속하거나 접속과 관련된 사항의 추가,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참가기관은 참가기관 이외의 자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국고전산망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운영시간) ① 제18조제1항제1호의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업무 처리시간은 한국은행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② 금융업무실장은 한국은행의 근무시간 변경, 각 관서의 장의 요청,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국은행금융결제망, 국고전산망 또는 참가기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업무 처리시간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비용부담) ①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국고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의 통신회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한국은행이 국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하여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통신회선 사용료는 한국은행이 부담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통신회선 사용료는 그 기관이 부담한다.

②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국고업무 이외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통신회선 사용료 부담 여부 및 부담 비율을 한국은행이 정한다.

③ 국고전산망의 통신회선 유지정비 비용은 한국은행이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가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연결된 통신회선의 사용료와 유지정비 비용은 요청한 기관이 부담한다.

제22조(전문의 송수신) ①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이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상호간에 송신한 전문은 수신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은 수신 전문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결과 흠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리를 거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 또는 참가기관이 송신한 국고금이체 관련 전문 또는 자료가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도달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한국은행과 참가기관 간에 송수신한 각종 전문 및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들은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3조(표준화) IT전략국장은 국고전산망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참가기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장비와 통신방식, 송수신 전문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참가기관의 의무) ① 참가기관은 이 규정 및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이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참가기관은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및 국고금 관련 자료 송수신 등의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참가기관은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참가기관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전산망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전산망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9조의 약정을 해지하거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국고전산망의 유지·관리) 국고전산망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유지·관리업무는 IT전략국장이 담당한다.

제26조(업무지속성의 확보) ① 국고전산망의 업무지속성 확보에 관하여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한국은행, 참가기관 및 기획재정부는 업무지속계획 수립 시 상호 참여하여 실효성있는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계산 및 증명) ① 한국은행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감사원의 「계

산증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계산·증명업무를 수행한다.

② 한국은행은 국고금의 계산 및 증명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된 회원조합 등이 은행인 경우의 적용)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된 회원조합 등이 「은행법」 제2조에 의한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제20조제2항, 제24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업무실장이 정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제23조 및 제25조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IT전략국장이 정한다.

부칙전략

부 칙 <1999. 7. 1>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8. 1.부터 시행한다.
- ② (기존 대리점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은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③ (불량대리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선정된 불량대리점에 대한 제재 및 국고금의 집중지연 발생에 대한 제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1. 11. 23>

이 규정은 2001.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1>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28>

이 규정은 2003. 5.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

이 규정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3>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국고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은 2008년 7월 31일까지 한국은행과 국고전산망 이용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3. 26>

이 규정은 2009.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14>

이 규정은 2010. 8.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 11.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2>

이 규정은 2012. 2.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2.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국고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이전에 체결된 약정 및 승인 등을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약정 및 승인으로 본다.

부 칙 <2016.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10.>

이 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14.>

이 규정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